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세법 해석요청에 대해 신속한 회신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를 보완하고, 고액의 관세 포탈범 명단공개를 위한 공개내용·공개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 조사·부과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하여 전송요구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에 의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관세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안 제1조의3)

관세법 해석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법 해석 및 회신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나, 입법 취지에 따른 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안 제141조의5)

관세포탈범의 성명·나이 등을 5년간(상습범은 10년간) 공개하고, 세액미납 또는 형 집행 미완료시 계속 공개하도록 하며,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안 제71조의2 등 신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은 덤핑방지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외형이나 포장방법, 용도 등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가 담당하며, 부과요청인의 조사신청 이외 무역위의 직권조사 개시를 허용하는 한편, 조사신청 절차·제출 자료·조사 개시 및 이해관계인 협조요청 등 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는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141조의13 제2항, 별표2의2)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를 전송 가능하도록 함.

마.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안 제251의2조)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의 포장용기, 운반·운송수단까지 확대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액을 설정함.

바.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63조의3)

관세청이 법무부·외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게 마약밀수·유통
범죄이력자,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자 등의 개인정보를 요청 가능하도
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조의4제2항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을 “(장부 등의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를 “법 제12조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13조 단서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품에는”을 “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 후”를 “국내 도착 후”로, “위탁판매수입물품”을 “위탁 판매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등에서 수입하는”을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입하는”을 “국내에 도착하는”으로 한다.

6. 무상으로 임차하여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제3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각각 “관세조사”로 한다.

제61조제4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로, “관보”를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하여 연장하게”로 한다.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제65조제2항(중전의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제6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제3항 단서”를 각각 “제3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2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5조제3항 단서”를 “제65조제3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를 “제2항 및”으로 한다.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2항에서 정한 공급자가 아닌 공급자 및 해당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 다만, 특수관계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제2항 단서에 따른다.

제67조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덤핑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가.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나.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잠정조치가 없었다면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을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는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덤핑

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덤핑방지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수락된 약속의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을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치”로,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덤핑방지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우회덤핑의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용도 등을 변경(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법 제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 상의 품목 번호가 변경되는 지 여부는 관계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한 자는 무역위원회에 경미한 변경을 통해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과 관련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 의결서 공개본

다. 신청인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부

라.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사진, 도면, 사양, 표준 등 시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품명·규격·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마.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공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

과 우리나라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바.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국내 동종물품의 품명·규격·특성·용도

· 생산자·생산량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수입사실과 당해 물품의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3. 신청인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3부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물품

2. 조사대상 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정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제7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우회덤핑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 물품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제71조의3제3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선정에 있어,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1조의5(우회덤핑의 직권조사) ① 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이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그 즉시 결정 내용과 제71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회덤핑 직권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와 관보 게재 및

관세청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4항 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1조의4제4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은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으로 본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입물품에 대한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71조의6(우회덤핑의 조사) ①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1조의4 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방지관세에 대한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게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7(우회덤핑 조사의 철회 및 중지) ① 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에 따라 개시된 직권조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71조의8(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 및 덤프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로, 같은 항 단서의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8제1항 전단 및 제71조의3제3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의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는 “우회덤핑방지”로,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는 “제71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71조의8제1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 있는 후”는 “진술 또는 협의가 있는 후”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관세청장은 제7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하여 이 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9(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의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의8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에 따른 관보게재일 이후 수입되는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1조의10(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7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된 때
 2.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한 때
 3. 제71조의6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
 4. 제7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
 5. 제71조의7에 따라 조사신청 철회 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제4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무역위원회는”으로, “관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연장하게”를 “추가하여 연장하게”로 한다.

제7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 모두”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중 “수출자”를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및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각각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 단서”를 “제2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79조제3항”을 “제79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②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에서 정한 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및 해당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1.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다만,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 수출자

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 다만,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81조제1항 전단 중 “최종판정이 있기”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가.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나.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잠정조치가 없었다면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83조제2항 중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종 상계관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을 “최종상계관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액 상당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으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세액을 환급하여야”를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을 “상계관계의 부과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상계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수락된 약속의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각각 “상계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을 “시행 중인 상계조치”로, “상계관세 또는 약속”을 “상계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로 한다.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 하락률(이하 “하락률”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아래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하락률 - 10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제95조제1항 중 “편익”을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을 “편익관세를 적용받을”로, “가, 나 및 다”를 “가 및 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3조제1항”을 “법 제83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제1항 중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를 “이 절”로, “이 조에서”를 “이 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를 수정 (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106조제7항 중 “제4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각각 “협약”으로 한다.

제1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제3항”을 “법 제83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41조의5의 제목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를 “(고액·상습채납자 등 명단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채납자 명단공개”를 “명단공개”로, “채납된”을 “채납하거나 포탈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141조의11제1항제4호 중 “고액·상습채납자”를 “자”로 한다.

제14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13(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과세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⑧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요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 중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1조의2의 제목 “(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을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46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제251조의2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항제1호: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항제2호: 구매가격의 범위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

제2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외교부장관: 최근 10년간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구금 또는 수감되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2. 법무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나.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과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
가 된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
분내역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로서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
약류를 과다 처방받은 개인의 성명·생년월일·처방일자·처방기관
·제품명·수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
령을 위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
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의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
및 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접속기기·
조회일시

제28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
관세종합정보망”을 각각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85조의3을 삭제한다.

제285조의6의 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의 부과기준 등)”을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7조의2
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27조의2제4항 또는 제327조의3제3항”을 “법 제327조

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한다.

제285조의7제1항 중 “법 제327조의2제5항 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을 “법 제327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중 “법 제116조제1항제5호”를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6조의6제1항”으로 하고, 비고 제1호 중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또는 제116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번호 42의 과세자료명란 중 “「소득세법」 제164조”를 “「소득세법」 제164조의2”로 하고, 같은 표에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 용역 거래 명세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4	국세청	「법인세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료·사용료·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6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 중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계산서 자료	관세청	매년 7월 31일
67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	관세청	매년 1월 31일,

		고서		7월 31일
6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 세서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69	「공공기 관의 운영 에 관한 법 률」 제4조 부터 제6조 에 따라 지 정·고시 된 공공기 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한 자 료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에 해당하는 계약자료	관세청	매년 1월 31일, 7월 31일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를 “제15부터 제24호까지, 제41호, 제42호, 제53호,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마목 중 “제58호”를 “제58호, 제67호부터 제69호까지”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42호”를 “제42호, 제62호부터 제66호까지”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6조제1항 또는 제6항”을 “법 제116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법 제116조의6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 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51조의2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2. 제1조의4제2항, 제13조, 제141조의13, 제28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85조의3, 제285조의6, 제285조의7제1항, 별표 2의2, 별표 5 제2호히목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3.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10까지의 개정 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11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시적 수출입 제한 금지에 따른 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4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51조2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세관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

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
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
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
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바.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
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3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자. 법 제135조제2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차. 법 제136조제3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카.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타.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제7항제4호				
파.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하.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거.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너.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더.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러.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며.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버.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서.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어.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저.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처.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커.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터.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퍼.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5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허.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고.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노.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도.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로.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모.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7항제7호				
보.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소.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오.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조.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초.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코.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토.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포.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호.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구.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에서 작업을 한 경우					
누.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두.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루.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무.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부.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수.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우.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주.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25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추.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쿠.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투.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푸.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제6항제2호				
후.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그.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7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느.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드.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르.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므.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브.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스.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우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으.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즈.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츠.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크.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1호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트.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프.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흐.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기.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6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니.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50만원
디.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2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리.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경우					
미.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6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00만원
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7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이. 법 제216조제3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치. 법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2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키. 법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 단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티. 법 제263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보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3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피. 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	법 제277조 제3항제4호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히. 법 제327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 구간별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가. 법 제13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10만원	50만원 25만원	100만원 50만원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0만원 25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25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 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5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6항제2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 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 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2)부터 4)까지에서 같다)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4)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오류	법 제277조 제7항제4호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20만원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 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 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 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 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 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법 제277조 제7항제1호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재화물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오류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
-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7조 제1항	

1)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4천만원
2)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천만원
3)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원
나.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7조 제2항	(1 + 지연기간/30) × [가목1)부터 3)까지에서 정한 금액]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제5항 본문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금품 상당액의 2 배 금품 상당액의 3 배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금품 상당액의 2 배 금품 상당액의 3 배 금품 상당액의 4 배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 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금품 상당액의 5 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생략)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u>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 (생략)	제1조의4(기한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②----- ----- -----

비정상적인 가동이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 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가동이 정지되어 법에 따른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납부 등을 기한까지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의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3조(신고서류의 보관기간) ①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 3. (생략)

②제1항 각 호의 자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국가관세종합 정보시스템-----

-----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

-----.

제3조(장부 등의 보관)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

<신 설>

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접수

4.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제출
· 접수한 서류 및 인·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

판매되는 <u>물품</u>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u>수입</u>하는 물품 2. <u>수입</u>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u>위탁판매 수입물품</u>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u>수입</u>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u>수입</u>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u>수입</u>하는 물품 6. 무상으로 <u>임차</u>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u>수입</u>하는 물품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⑤ (생략) ⑥ 관세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심사의	----- <u>물품</u>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 1. ----- <u>국내</u>에 도착하는 -- 2. <u>국내</u> 도착 후 ----- ----- <u>위탁판매</u> <u>물품</u> 3. ----- ----- <u>국내</u>에 도착하는 -- 4. ----- ----- <u>등과</u>의 거래에 따라 <u>국내</u>에 도착하는 -- 5. ----- <u>국내</u>에 도착하는 -- 6. 무상으로 <u>임차</u>하여 <u>국내</u>에 도착하는 물품 7. ----- ----- ----- <u>국내</u>에 도착하는 -- 제31조(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인에 대해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과세가격에 대한 관세조사에 한정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신청인에 대한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에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3. · 4. (생략)

⑦ ~ ⑪ (생략)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생략)

④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에 따른 덤핑차액 또는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_____.

1. ----- 관세조사

2. ----- 관세조사

3. · 4.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61조(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무역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통보해야 하며, 기획

한다.

⑤ ~ ⑦ (생략)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 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 ② (생략)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 2. (생략)

④ (생략)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신설>

재정부장관은 이를 관보--.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추가하여 연장하게 --.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63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에 모두 -----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 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단일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단일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료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②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공급자 중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한다. -----

-----.

<삭 제>

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공급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국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공급자중 제2항에서 정한 공급자가 아닌 공급자 및 해당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공급국의 신규공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다만,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공급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덤

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공급자에 대한 덤프방지관세를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적용. 다만,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공급자에 대해서는 제2항 단서에 따른다.

- ④ 제3항제2호 -----

-----.
- ⑤ 제3항제2호 -----

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공급자의 가격수정·수출중지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6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수입가격은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공급국의
정상가격에 수입관련비용을 가
산한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생략)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부과될 덤핑방지관세액은 잠정덤핑방지

⑥ 제3항 제2호 단서 -----

“제65조 제3항 제2호 -----
-----”.

⑦ 제2항 및 -----

제67조(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턴
평방지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

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후에 수락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덤핑률이 잠정덤핑방지관세율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덤핑방지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55조 단서에 따라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

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그 담보금액을 덤핑방지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③ -----

----- 최종덤핑률을 기초로 산정한 덤핑방지관세액 상당액이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또는 제공된 담보금액-----
--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
--.

제69조(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

① -----

-----.

1. 다음 각 목의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
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2. ~ 4. (생략)

② (생략)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
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
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
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
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1.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가.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나.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
가 있다(잠정조치가 없었
다면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
다)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또
는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
다)-----
-----.

1. 덤핑방지조치-----

시행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
우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제 덤핑차액보다 덤핑방지
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
우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
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일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
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덤
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월 이전에 요청해
야 한다.

③ (생략)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는
경우외에 부과중인 덤핑방지관
세율 및 시행중인 약속의 적정
성 여부에 관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덤핑방지

--

2. 덤핑방지조치-----

3. -----
----- 경
우 또는 수락된 약속의 가격
수정이 과도한 경우

②-----
-- 덤핑방지조치-----

----- 덤
핑방지조치-----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행 중인 덤핑방지조
치-----

----- 덤핑방지

관세 또는 약속의 내용(재심사
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덤핑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
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
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
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
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
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
속된다.

⑨ (생략)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
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
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
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조치-----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5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현행과 같음)

⑩-----

----- 정보를 바탕으

덤핑방지조치를 할 수 있다.

⑪ ~ ⑬ (생략)

<신설>

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
다.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우회덤핑의 유형) 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서 “제51
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
과물품 공급국에서 본질적 특성
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
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용도 등을 변경(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행위를 말
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법 제
84조에 따른 품목분류표 상의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지 여부는
관계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신 설>

할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의3(우회덤핑 조사의 신청)

①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을 한 자는 무역위원회에 경미한 변경을 통해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이하 “우회덤핑”이라 한다)하려는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을 받은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료는 제71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3부

가.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과

관련된 덤프방지관세 부과
조치

나. 덤프방지관세 부과물품과
관련된 무역위원회 의결서
공개본

다. 신청인이 덤프방지관세
부과물품의 덤프방지관세
부과요청을 한 자인지 여
부

라. 우회덤프 조사물품의 사
진, 도면, 사양, 표준 등 시
각적 요소를 제공하는 자
료를 포함하여 품명·규격
· 특성·용도·생산자 및
생산량

마. 우회덤프 조사물품의 공
급국·공급자·수출실적
및 수출가능성과 우리나라
의 수입자·수입실적 및
수입가능성

바. 우회덤프 조사물품의 국
내 동종물품의 품명·규격
· 특성·용도·생산자·
생산량

사.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첩
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신 설>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아.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우회덤핑 조사물품의 수입 사실과 당해 물품의 우회덤핑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
3부

3. 신청인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
3부

제71조의4(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①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우회덤핑 조사물품

2. 조사대상 기간

3. 조사대상 공급자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를 정

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정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에 조사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사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제7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우회덤핑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해당물품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제71조의3제3항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 설>

⑤ 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 물품의 선정에 있어, 품목분류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71조의5(우회덤핑의 직권조사)

① 법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 등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이 조사의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그 즉시 결정 내용과 제7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우회덤핑 직권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와 관보 게재 및 관세청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71조의4제4항 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1조의4제4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조

<신 설>

사개시결정”은 “제7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으로 본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우회덤핑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입물품에 대한 우회덤핑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무역위원회에 통지할 수 있다.

제71조의6(우회덤핑의 조사) ①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의 사실에 관한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담당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우회덤핑 사실이 확인된 물품에 대해 법 제56조의2에 따른 덤프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접수되면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의5제2항에 따른 관보게재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

<신 설>

의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
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
핑방지관세에 대한 부과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보
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물품
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
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 고시한다.

제71조의7(우회덤핑 조사의 철회
및 중지) ① 제71조의3의 규정
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한 자는
당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를 제출하기 전에 당해 철회서
를 접수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
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

<신 설>

의하여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을 중지하거나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5에 따라 개시된 직권조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71조의8(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 및 덤프방지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로, 같은 항 단서의 “덤핑사실여부”는 “우회덤핑 여부”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은 “제71조의8제1항 전단 및 제71조의3제3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2조의 조사”는 “법 제56조의2의 우회덤핑 조사”로, “덤핑방지”는 “우회덤핑방지”로,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68조”는 “제71조의3제3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와 제71조의8제1항 전단”으로,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공청회 등이 있는 후”는 “진술 또는 협의가 있는 후”로 본다.

② 관세청장은 제7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신 설>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료제출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④ 관세청장은 제71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 자료 및 인지한 사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의9(우회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의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에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에 따른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의8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

<신 설>

하게 방해하는 공급자에 대하여
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에 부
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 또는 기
준수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의 부과는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제71조의4제4항 및 제71조
의5제2항에 따른 관보게재일 이
후 수입되는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1조의10(우회덤핑과 관련한 이
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를 결정하거나 당해 조치를 하
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71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u>하여 조사신청이 기각된 때</u> <u>2. 제7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한 때</u> <u>3. 제71조의6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한 때</u> <u>4. 제7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u> <u>5. 제71조의7에 따라 조사신청 철회 또는 직권으로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이 중지되거나 조사가 종결된 때</u> <u>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의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u> <u>④ 무역위원회는 제71조의6제2항에 따른 우회덤핑 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u> 제75조(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	--

① ~ ③ (생략)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예비조사에 따른 보조금등의 금액 또는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본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본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⑤ ~ ⑦ (생략)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상계관세의 부과 조치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본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⑨ · ⑩ (생략)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 ② (생략)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4) -----

----- . ----- 무역

위원회는 -----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

은 이를 관보--.

⑤ ~ ⑦ (현행과 같음)

(8) -----

----- 추가
하여 연장하게 --.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77조(실질적 피해등의 판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 따른 피해를 통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2. (생략)

④ (생략)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관세는 수출자 또는 수출국별로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단일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의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

-- 각 호에 모두 -----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상계관세의 부과) ① ----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수출자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수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출자 ----. -----
-----.

②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로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출을 한 수출자 중 제1항에서 정한 수출자가 아닌

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에 의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조사대상기간중에 수출을 한 자로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중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수출자 및 해당 조사대상 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1.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들에 대해 적용되는 상계관세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적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 다만, 자료를 제출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조사절차 등과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신규 수출자에 대해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조사대

③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을 지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당해 수출국의 신규수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신규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다고 증명하는 때에는 조사를 통하여 별도의 상계관세율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조사절차 등을 달리할

상으로 선정된 수출자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 다만,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검증이 곤란한 신규수출자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삭 제>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규수출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상계관세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정한 상계관세율은 해당 조사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신규수출자의 가격수정 등의 약속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 전단 중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은 “제79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사의 종결”로 본다.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상계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법 제60

③ 제2항제2호 -----

-----.

④ 제2항제2호 -----

-----.

⑤ 제2항제2호 단서-----

-----.

----- “제79조제2항제2호 -----

-----.

제81조(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 ①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으로
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 최종 판정을 하기 45일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2조(상계관세의 소급부과) ①-

-----.

1. 다음 각 목의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
가. 실질적 피해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나. 실질적인 피해등의 우려가 있다(잠정조치가 없었다면 보조금등을 받은 물

동안 수입된 물품

2. ~ 4. (생략)

② (생략)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 (생략)

②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가 제공된 경우로서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중에 소급 부과될 상계관세액은 잠정상계관세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속이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

품의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경우
오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상계관세액이 제공된 담보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그 담보금액을 상계관세액으로 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적을 때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한다.

③-----

으로 판정이 내려진 후에 수락
된 경우로서 조사된 최종상계관
세율이 잠정상계관세율과 같거
나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
하지 아니하며,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잠정상계관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
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
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
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상계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
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
하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재
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
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
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최종상계관
세율을 기초로 산정한 상계관세
액 상당액이 잠정상계관세액 또
는 제공된 담보금액-----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해제해야 --.

제84조(상계관세 및 약속의 재심
사) ① -----

상계관계의 부과 또는 법 제60
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상계조치”라 한다)-----
-----.

1. 상계조치-----

2. 상계조치-----

3. 실제 보조금 등의 금액보다
상계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요청
은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상계관세 또는 약
속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 6개월
이전에 요청해야 한다.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외에
부과 중인 상계관세율 및 시행
중인 약속의 적정성 여부에 관
한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내
용(재심사에 따라 변경된 내용
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매년 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보조금등
을 받은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
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재검토에 필요한 자
료를 작성하여 매년 그 시행일
이 속하는 달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3. -----

-- 경우 또는 수락된 약속의
가격수정이 과도한 경우

② -----
-- 상계조치-----

----- 상계조치-----

-----.

③ (현행과 같음)

④ -----

시행 중인 상계조치-----

----- 상계조치-----

-----.

⑤ ~ ⑦ (생략)

⑧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심사를 하는 경우 재심사기간 중에 해당 상계관세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그 재심사기간 중 해당 조치의 효력은 계속된다.

⑨ (생략)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국정부 또는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의하여 상계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⑪ ~ ⑬ (생략)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 ③ (생략)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말한다.

⑨ (현행과 같음)

⑩ -----

----- 정보를 바탕으로 상계관세율을 산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60 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에 의한 관세에 기준가격 대비 수입가격 하락률(이하 “하락률”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아래 표의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하락률	특별긴급관세액
1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하락률 - 10 퍼센트포인트) × 30퍼센트
4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9퍼센트 + (하락률 - 40 퍼센트포인트) × 50퍼센트}
60퍼센트 초과 75퍼센트 이하	기준가격 × {19퍼센트 + (하락률 - 60 퍼센트포인트) × 70퍼센트}
75퍼센트 초과	기준가격 × {29.5퍼센트 + (하락률 - 75 퍼센트포인트) × 90퍼센트}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 하락률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40까지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⑤ ~ ⑨ (생략)

제95조(편익관세) ①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다음 표와 같다.
②법 제74조에 따라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제1항의 표에 따른 국가의 생산물 중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95조(편익관세) ①-----
-----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
②편익관세를 적용받을-----

(이하 이 조에서 “양허표”라 한다)의 가, 나 및 다에 따른 물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세분되거나 통합된 때에도 동일한 편익을 받는다.

③ (생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때
2. 기타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때

⑤ (생략)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

----- 가 및 나-----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

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
 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
 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
 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
 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
 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
 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
 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
 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 -----

 ----.

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
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
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
 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이 절-----

통관, 통계과약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

----- 이 절
에서 -----
-----.

② 법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법 제84조 각 호를 수정(품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거나 다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84조제2호에서 “대통령

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⑥ (생 략)

⑦ 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

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 관세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따른 품목분류를 말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4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정해야 한다.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 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
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⑧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
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1. (생략)

2.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
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전
(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략)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법
제87조제1항에서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
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
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
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

---- 제7호까지-----
-----.

⑧ -----

-----.

1. (현행과 같음)

2. 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

3. (현행과 같음)

제107조(품목분류의 변경) ① ---

-----.

<삭 제>

<삭 제>

가 변경된 경우

3. (생략)

4.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5. (생략)

②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결정이 있는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생략)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협약-----

5. (현행과 같음)

② ----- 협약-----

-----.

제109조(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3조제3항 단서-----

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41조의5(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채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채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5(고액·상습채납자 등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

-----.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채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채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 명단공개 -----
----- 채납
하거나 포탈한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고할 사항은 관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포탈관세액 등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관세포탈범의 범칙행위가 법 제279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명칭·주소·대표자 또는 해당 개인의 성명·상호, 주소를 함께 공개한다.

⑥ 관세청장이 법 제116조의2제

<신 설>

5항에 따라 명단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1.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5년

2. 법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채납자

5.·6. (생략)

② (생략)

<신설>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자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1조의13(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16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③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을 특정하여 요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과세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관세청장은 전송요구를 받은 과세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과세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과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⑥ 납세자는 법 제116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116조의6제4항에서 “납세자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4. 법 제116조의6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 납세자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법 제116조의6제2항에 따라 전송된 과세정보를 알게 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1조의4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⑨ 전송과세정보 공유자는 제8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244조(통관의 보류) 법 제23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⑩ 관세청장은 전송과세정보 공유자에게 제9항에 따른 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정보의 전송요구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4조(통관의 보류)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2.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1조의2(물품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 <신 설>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물품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
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물품
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신 설>

<신 설>

제251조의2(물품 등의 검사에 대
한 손실보상의 금액) ① 법 제2
46조의2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검사한 물품
2. 제1호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② -----

1. -----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부터 제3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
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
당하는 금액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범위에
서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
하는 금액

2. (생략)

<신설>

2. (현행과 같음)

제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관세청장은 법 제264조의11에 따른 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기관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외교부장관: 최근 10년간 해외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구금 또는 수감되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1조에 따라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의 성명·생년월일, 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2. 법무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과 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나.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과 기록 또는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 외국인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로서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생년월일·처방일자·처방기관·제품명·수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제38조에 따른 국제우편물(법령을 위반하여 우

	<u>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마약류를 배달한 우편물만 해당한다)의 수취인의 성명·주소, 배송일자 및 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 프로토콜(protocol) 주소·접속기기·조회일시</u>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법 제327조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u>국가관세종합정보망</u> 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3. ----- ----- <u>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 ----- ----- ----- -----
4.·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 -----.

1. (생 략)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생 략)

③ (생 략)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
류 중 납부서·납부고지서·환
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
우에는 법 제3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
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
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⑤ (생 략)

제285조의3(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① 법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
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의 지
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1. (현행과 같음)

2. -----
----- 국가
관세종합정보시스템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유지
· 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
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일 것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
할 것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을 보유할 것

②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
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
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지정을 받은 운영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세청장이 국가관세종합정
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한 때에
는 해당 신청인에게 지정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 및 관세업무 관련 기
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5조의6(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2
제5항 또는 제327조의3제4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의 기간에 제2호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
한 금액이 1억원을 넘을 때에는
1억원으로 한다.

1. 기간: 법 제327조의2제4항 또
는 제327조의3제3항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일수(1개월
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생략)

②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
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
계사업자의 사업규모·위반행
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
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의 금액의 4분의 1의 범위안에
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

제285조의6(전자문서중계사업자
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7조의3제4항-----

-----.

1. ----- 법 제327조의3제3항-----

2. (현행과 같음)

②----- 전자문서중계사
업자-----

-----.

할 수 없다.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관 세청장은 <u>법 제327조의2제5항</u> <u>또는 법 제327조의3제4항</u>에 따 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 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 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제285조의7(과징금의 납부) ①-- ----- <u>법 제327조의3제4항</u>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411